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3. 7. . (제 회)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기업도시과)
제출연월일	2013. 7. .

#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 일자: 2013년 월 일

제출 자: 고령군수

##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군계획시설 결정 등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 법조항 및 어법 정리 등

## 2. 주요내용

- 가.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조항정리 (안 제9조 제1호~제8호)
- 나. 지구단위계획 구분(1·2종) 폐지에 따른 수정 (안 제15조 및 제21조)
- 다.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추가 (안 제17조의1 제5호 및 제6호)
- 라. 도시지역 외 지역의 도로 확보 기준 완화 (안 제21조)
- 마. 군계획상임기획단 신설 (안 제76조에서 제79조)

## 3. 내 용 : 불 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 5.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발취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 제56조, 제57조, 제114조
- 3) 「자연공원법」 제18조

### 나. 입법예고 결과

### 다. 예산관련 사항

### 라. 기타 참고자료

##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열람기간 동안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 (1회 이상으로 한다),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를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를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을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 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0분의1”을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분의3”을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0분의2”을 “20퍼센트”로 하고 “(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같은 조 제6호의1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1.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 6의2.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 중 “변경”을 각각 “변경인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제15조의 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본문 중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영 제43조제4항제2호의 규정”으로 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7조의1 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 목의 참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하고,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0조제1항제2호 중 “자문”을 “자문 또는 심의”로 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는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읍지역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외의 지역은 진입도로의 너비가 일반도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로 부터 4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단, 부지면적은 연접하여 개발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가. 건축물 신축 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나. 건축물 사용승인 후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로 증가되는 경우
  - 라.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농·어·축산업)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를 설치·이용하는 경우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등을 확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정화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8조제3호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으로 한다.

제58조의2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5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를 “제2조제8호 라 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 한다)”로 한다.

제64조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장 제2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 계약직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78조(임용 및 복무)**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9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2013. . 조례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u>동법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같은 법 시행령</u>」----- ----- ----- ----- -----.</p>
<p>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u>열람기간 동안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u>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u>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u>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 ----- ----- ----- -----<u>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u>----- ----- ----- ----- -----.</p> <p>② ----- ----- ----- ----- -----<u>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u>----- ----- ----- ----- -----.</p>



현행	개정안
<p>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u>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u></p> <p>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u>10분의1</u> 이내의 변경</p> <p>3. 획지면적의 <u>10분의 3</u> 이내의 변경</p> <p>4. 건축물높이의 <u>10분의 2</u> 이내의 변경</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5. <u>군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u></p> <p>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u>변경</u>,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p>	<p>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현행과 같음)</p> <p>1. ----- <u>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u></p> <p>2. ----- <u>10퍼센트</u> -----</p> <p>3. ----- <u>30퍼센트</u> -----</p> <p>4. ----- <u>20퍼센트</u> -----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5. <u>&lt;삭 제&gt;</u></p> <p>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u></p> <p style="padding-left: 2em;"><u>6의1.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u></p> <p style="padding-left: 2em;"><u>6의2.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u></p> <p>7. ----- <u>변경인 경우,</u> -----</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8.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u>변경</u></p>	<p><u>7의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u></p> <p>8. ----- -- <u>변경인 경우</u></p>
<p>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u>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u>으로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06.11.30&gt;</p> <p>1. ~ 7. (생략)</p>	<p>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 ----- <u>지구단위계획구역</u>으로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06.11.30&gt;</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17조의1(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① (생략)</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17조의1(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하고,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u></p> <p><u>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u></p>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생략)</p> <p>1. (생략)</p> <p>2.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초과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u>자문</u>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측정 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자문 또는 심의</u>----- -----</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생략)</p> <p>1.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법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읍이 아닌 지역은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마목 (3)의 규정에 따라 건축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이상인 신축주택의 경우, 진입도로의 너비는 일반도로로 부터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농·어·축산업용의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한다)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를 설치·이용하는 경우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등을 확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화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현행과 같음)</p> <p>1.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는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읍지역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외의 지역은 진입도로의 너비가 일반도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로 부터 4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단, 부지면적은 연결하여 개발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p> <p>가. 건축물 신축 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p> <p>나. 건축물 사용승인 후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p> <p>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로 증가되는 경우</p> <p>라.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농·어·축산업)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2. (생략)</p> <p>3. (생략)</p>	<p><u>1의2.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를 설치·이용하는 경우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등을 확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화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생략)</p> <p>1. ~ 2. (생략)</p> <p>3. 「<u>자연공원법</u>」에 의한 자연공원 및 <u>공원보호구역</u> : 60퍼센트 이하 &lt;개정 2006.11.30&gt;</p> <p>4. ~ 5. (생략)</p>	<p>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p> <p>1. ~ 2. (생략)</p> <p>3. 「<u>자연공원법</u>」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lt;개정 2006.11.30&gt;</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58조의2(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u>영 제84조제7항</u>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제58조의2(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u>영 제84조제8항</u>----- ----- ----- -----</p> <p>1. ~ 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생략)</p> <p>1. ~ 21.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u>제12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p> <p>④ (생략)</p>	<p>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현행과 같음)</p> <p>1. ~ 21.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del>제16조제1항</del>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생략)</p> <p>1. (생략)</p> <p>2. 「<u>자연공원법</u>」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u>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한다</u>)</p> <p>3.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u>」 <u>제2조제5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u> : 150퍼센트 이하</p>	<p>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자연공원법</u>」에 의한 자연공원 : <u>100퍼센트 이하</u></p> <p>3. ----- <u>제2조제8호 라 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u> -----</p>

현행	개정안
<p>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u>&lt;신 설&gt;</u></p>	<p><u>제 2 절 군계획상임기획단</u></p>
<p><u>&lt;신 설&gt;</u></p>	<p>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li> <li>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li> <li>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li> </ol> <p>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p> <p>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p> <p>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 align="center"><u>&lt;신 설&gt;</u></p>	<p>제77조(단장의 임무 등)</p> <p>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p> <p>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p> <p>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p>
<p align="center"><u>&lt;신 설&gt;</u></p>	<p>제78조(임용 및 복무 등)</p> <p>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기획단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 align="center"><u>&lt;신 설&gt;</u></p>	<p>제79조(자료·설명요청)</p> <p>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 군계확상임기획단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개정안 제76조는 군계확상임기획단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군계확상임기획단 설치로 인건비, 사업비 등의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2. 비용추계의 전제

-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내에서 증원되는 정원임
- 기준호봉은 계약직 공무원 6급 1호봉으로 가정하고, 일반직은 9급 1호봉으로 산정
- 2013년 지방공무원 보수표를 적용함.
-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산정 보수인상을 연 4.2%를 기준으로 연도별 인건비 부담액을 산정함.
- 군계확상임기획단은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 연구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

### 3. 비용추계의 결과

- 증원되는 10명의 인건비는 288,679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세출	인건비	288,679	300,803	313,436	326,600	340,318	1,569,836
	소계(a)	288,679	300,803	313,436	326,600	340,318	1,569,836
세입	지방세	288,679	300,803	313,436	326,600	340,318	1,569,836
	교부세	-	-	-	-	-	-
	소계(b)	288,679	300,803	313,436	326,600	340,318	1,569,836
총 비용(a-b)		0	0	0	0	0	0

#### 라. 재원조달방안

- 자체 지방세 세입으로 인건비 지원

#### 3. 작성자

- 기업도시과장 전 해 석

## <재원조달방안>

###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재원조달		288,679	300,803	313,436	326,600	340,318	1,569,836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88,679	300,803	313,436	326,600	340,318	1,569,836
	지방세	288,679	300,803	313,436	326,600	340,318	1,569,836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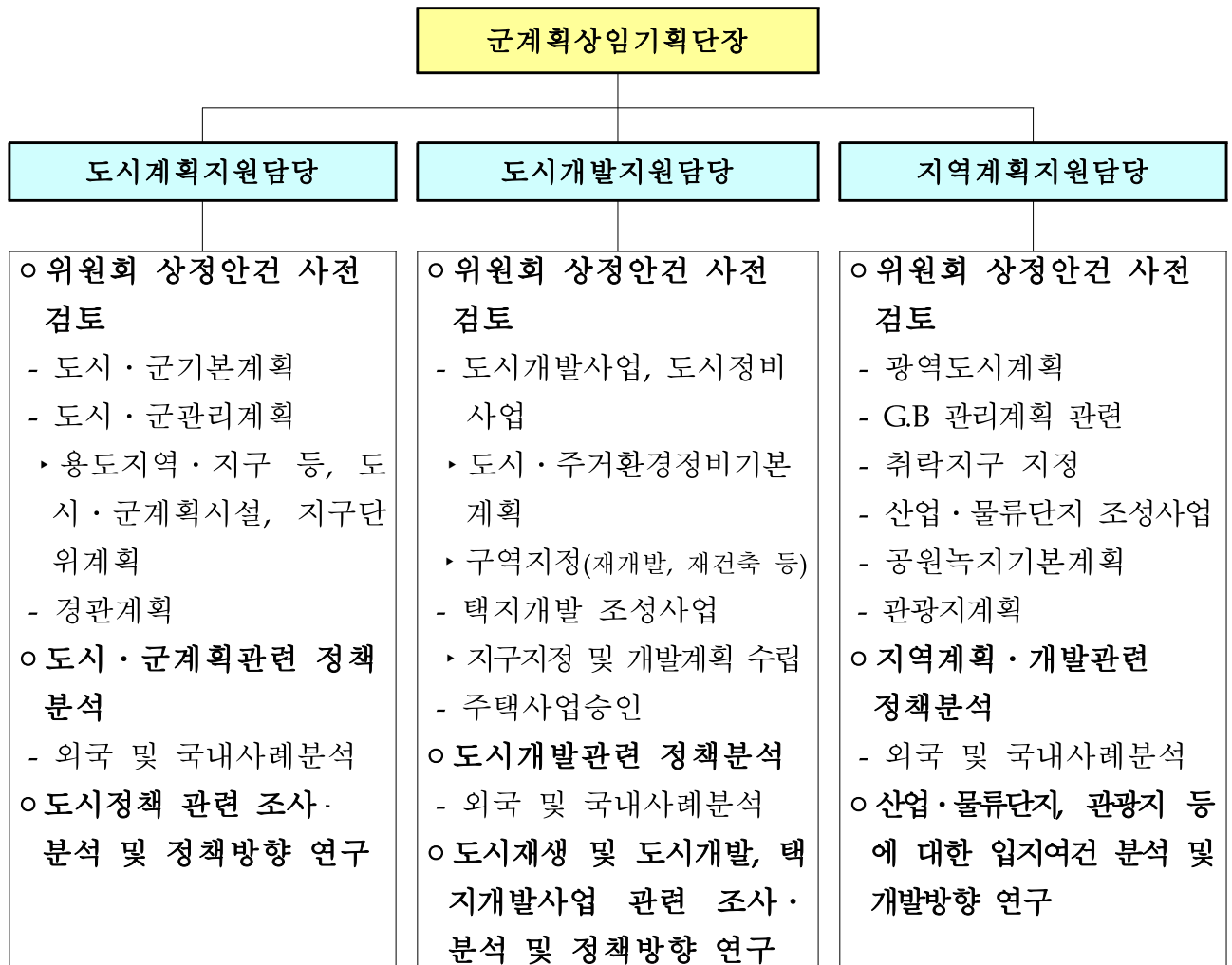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해당 연도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

### 3. 군계획상임기획단 조직도

- ◆ 구성인원 : 10명 내외
- 단장 : 5급 또는 민간전문가 1명(업무총괄)
  - 도시계획지원담당 : 4명(6급 1, 6~7급 3명, 계획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등)
  - 도시개발지원담당 : 3명(6급 1, 6~7급 2명, 개발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등)
  - \* 계약직 (석·박사급 1~2명), 전문위원

⇒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 직속으로 설치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기업도시과 도시계획담당	
연 락 처	(054) 950 - 6340